

평생교육원 운영규정

제정 2008.03.01.
 개정 2009.09.01.
 개정 2012.03.01.
 개정 2014.03.01.
 개정 2022.05.02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원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"본원")이라 칭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위치) 본원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원장)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겸임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조(교직원)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

제7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2.05.02.>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에 심의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설치과정 및 학점은행제 교과목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05.02.>
4.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5. 평생교육원 연간 사업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

6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9조(의결)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설치과정

제10조(학습기간)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

제11조(학기, 휴업일 등) 학기, 휴업일등에 관하여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을 준용 한다. <개정 2022.05.02.>

제12조(지원자격)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,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5.02.>

제13조(선발방법)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5.02.>

제14조(설치과정 등)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22.05.02.>

② <삭제 2022.05.02.>

제15조(학점은행제) 본원은 학점은행제에 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. <신설 2022.05.02.>

제16조(강사료) 본원에서 진행하는 설치과정의 강사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 <신설 2022.05.02.>

제17조의1(학습비)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7조의2(학습비 감면) ① 원장은 각 과정 수강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학습비를 50%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. 다만, 이중 감면은 할 수 없다. <신설 2022.05.02.>

1.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<신설 2022.05.02.>
2.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의 직계가족 <신설 2022.05.02.>
3.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대상자 <신설 2022.05.02.>

② 학습비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05.02.>

1.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<신설 2022.05.02.>
2.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재직증명서 및 교직원과의 가족관계증명서 <신설 2022.05.02.>
3. 기타 증빙서류 <신설 2022.05.02.>

제18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 과정의 교과목을 70%이상 이수한 자로

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<별지 1>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19조(평가주기/활용) 본원 만족도 조사 평가는 각 개설과정 종료 시 실시한다. 평가 후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연도에 반영한다. <신설 2022.05.02.>

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제20조(자치회)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약간 명의 임원을 둔다.

제21조(학습자 활동의 금지) <삭제 2022.05.02.>

제22조(포상)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 할 수 있다.

제 6 장 회 계

제23조(회계연도) 본원 회계 연도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4조(수입원)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학습비
2.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보조금
3.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 시)
4. 기타 수입

제25조(회계집행)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 및 대학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다.

제 7 장 공개강좌

제26조(공개강좌) 본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, 기간, 수강 인원,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 마다 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 8 장 보 칙

제27조(세칙)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

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1>

제 호

수료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 년 월 일

위 사람은 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

○○○과정 (○학점) 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
○○○과정 (○학점)

년 월 일

청강문화산업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원장 (직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(직인)